UNC Reg 525-8
유엔사 규정 525-8
CFC Reg 525-8
연합사 규정 525-8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 사령부
UNIT #15259
부대 #15259
APO AP 96205-0032
군우 96205-0032

HEADQUARTERS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 연합군 사령부
UNIT #15255
부대 #15255
APO-AP 96205-0028
군우 #96205-0028

REGULATION
규정
No.525-8
번호 525-8

1 November 1993

Military Operations
군사 작전
LAW OF WAR COMPLIANCE REGULATION
전쟁법 준수 규정

(3) 육전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헤이그 제 5협약 1907.10.18.

4. 약어,용어설명.

ACofS	Assistant Chief of Staff	참모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
CINC	Commander in Chief	사령관
HQ	Headquarters	본사
JA	Judge Advocate	법무실
LOW	Law of War	전쟁법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

가. 전쟁법. "육전법" 과 동일어이며 적대행위시 군사요원의 행동 및 용인되는 군사작전의 제 방식을 규정하는 조약, 역사적으로 확립된 관습과 관행, 국가 및 군사 정책을 다루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전쟁법은 군사경제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불필요한 인명피해나 불필요한 재산파괴를 극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전쟁범죄. 부당하게 비전투요원을 살해, 고문, 인질로 하는 행위, 전쟁포로에게 노역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된 무기나 군수품을 사용하는 행위, 사체훼손행위, 군사적인 중요성이 없는 무방비의 표적에 대한 공격행위, 휴전을 표시하는 깃발을 남용 혹은 이에 대한 발포행위, 적십자 깃발의 오용행위, 샘이나 시냇물에 독극물 살포행위, 목적없는 파괴나 약탈행위, 적대행위를 범하여 체포된 첩자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약식 처형, 항복의 거절, 이러한 사례들은 전쟁법 위반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5. 책임.

가. 유엔사/연합사 사령관은 교전규칙 및 작전계획, 정책과 훈령들이 전쟁법에 부합하도록 기안, 발령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작전참모부장은 유엔사/연합사 법무실장, 정보참모부장과 협조하여 유엔사/연합사 와 그 구성군들을 지원하는 표적선정계획이 전쟁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다. 작전참모부장은 유엔사/연합사 에서 제기된 교전규칙 및 작전계획,정책과 훈령들이 전쟁법과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규칙,계획 및 명령은 전쟁법 준수를 보장하기위한 법적인 검토를 위해 유엔사 및 연합사 법무실에 회부된다. 작전참모부장은 전쟁법을 포함한 실질적 훈련을 모든 작전연습에 포함시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육전법 연습을 받는 유엔사/연합사 요원에게 그들의 지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훈련이 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라. 기획참모부장은 유엔사/연합사 사령부에서 준비되고, 접수된 모든 작전계획, 정책과 훈령들이 작전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사 법무실과 연합사 법무실에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 유엔사 법무실장과 연합사 법무실장은 유엔사/연합사 에서 발령된 교전규칙과 작전계획, 정책과 훈령에 대한 법적검토 및 전쟁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지침을 제공하며 또한 전쟁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감독할 것이다.

바. 지휘관의 의지:

(1) 부대요원들이 1949년 제네바 협약에 포함된 전쟁법 원칙과 규칙,관련문헌 및 이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의 의무 및 책임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부대요원에 의해 혹은 이들에 대해 자행된 전쟁법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지휘계통과 관련된 적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관한 모든 첩보를 수집, 기록하여 유엔사/연합사 법무실 (수신: 유엔사법무실, 연합사법무실) 에 보고한다.

(4) 군사재판 관할하에 있는자의 전쟁법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제반 사건을 자국의 해당 군사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6. 방침

가. 국적에 관계없이 유엔사/연합사의 작전통제하 혹은 유엔사/연합사 지원작전을 하는 모든 육, 해, 공군 및 해병장병은 전쟁법을 준수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나. 유엔사/연합사 사령관의 작전통제부대 요원이 범하거나 위 요원에 대한 전쟁범죄는 즉각적으로 보고되고 철저히 조사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7. 절차. 전쟁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혐의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모든 지휘관은 자국 및 부대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이러한 위반사실을 유엔사 법무실장과 연합사 법무실장에게 통보하고 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이 규정의 제안자는 법무실이다.
사용자는 개선을 위한 제안과 논평을 미육군 양식 2028 (출판 및 백지양식에 관한 변경 건의) 한국 육군양식 1-6-2 의 형태로 제출하시오. 수신: 연법, #15255, 군우 96205-0028.

사령관을 대리하여:

서명관:

김 영 곤
한국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처장

윌리암 더블유 크라우치
미국 육군 중장
참모장

수신처:
연인 - 1
연정 - 10
연작 - 10
연군 - 5
연기 - 4
연통 - 2
연공 - 3
연운 - 1
연법 - 1
연비 - 5
연공보 - 1
연인-부 - 10
주한미군 통전참모부 출판기록 관리부 - 3
공계 - 2